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위탁관계에서의 기술침해 제재 강화〉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8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기술자료 정의 구체화 및 기술탈취 정의 신설 (안 제2조제9호 개정 및 제9호의2 신설 등)	3
2. 다른법률과의 관계(안 제28조의12 신설)	8
3.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안 제40조의9 신설 등)	9
※ 참고자료	23
1.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령 비교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위탁 거래, 입찰·제안요청, 투자협약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통의 경위와 고의·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술자료 정의 구체화 및 기술탈취 정의 신설

(안 제2조제9호 개정 및 제9호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9. “기술자료”란 <u>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9. ----- <u>영업활동에</u> ----- ----- ----- <u>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u> ----- ----- -----.
<신 설>	가. <u>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등 기술에 관한 자료</u>
<신 설>	나. <u>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관한 자료</u>
<신 설>	다. 「 <u>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영업비밀</u>
<신 설>	라. <u>그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의 정보</u>
<신 설>	9의2. “기술탈취”란 제25조제2항에 따른 <u>유용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요건</u>

10. ~ 13.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 ④ (생략) <신설>	<u>을 모두 갖춘 행위를 말한다.</u> <u>가. 대기업(대기업 중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를 말한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것일 것</u> <u>나.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또는 사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일 것</u> <u>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 경쟁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 우려가 현저할 것</u> 10.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기술탈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①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등 기술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관한 자료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④ 그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의 정보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또한, 현행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탈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탈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술탈취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것”이면서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또는 사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에게 경쟁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 우려가 현저”한 행위로 정의함.

현행법 제25조제2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유용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용행위 중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 경쟁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를 ‘기술탈취’로 특별히 정의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유용행위 중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관계에서 중소기업

업에게 경제적인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신규로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제도적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은 기술자료를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②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포섭하지 않고 있는 “영업비밀”, “그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의 정보”까지 그 개념을 확장하여 규정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확장되는 기술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되는바, 개정안의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등 기술에 관한 자료” 및 라목에 따른 “그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의 정보”에 비해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가목과 라목에 포섭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을 기술자료에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지식재산처는 기술자료의 정의에 영업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기술이라는 용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안 제2조 제9호라목의 “영업상의 정보”는 “정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따른 기술자료의 정의는 현행법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인 한편, 기술탈취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우 수·위탁관계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하여 기존 제재 수단에 비해 강화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더욱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다른법률과의 관계(안 제28조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기술탈취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안은 기술탈취 금지 의무를 신설하면서 기술탈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²⁾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 거래관계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법에 비하여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을 전제한 거래관계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법

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2024. 5, p.258.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법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위탁 거래관계에서만 작동하는 법률로, 기술탈취에 관하여 규정한 다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안 제40조의9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2항·제5항----- ----- ----- ----- -----.

1. 2. (생략)

③ (생략)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제25조제2항 또는 제5
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5조
제2항·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

-----.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 또는 제5항을-----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7(입증책임의 특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탈취에 관한 소송에서는 제25조의2에 따른 위탁기업의 입증책임과 함께 수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기술거래·위탁·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제40조의8(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보호대상 기술임을 명시 통지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요구한 경우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 또는 비사용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신 설>

<신 설>

우

제40조의9(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제40조의8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2항제2호 중 “손해의 5배 이내”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의 구체적인 산정지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기업이 기술탈취로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
2. 수탁기업이 입은 피해의 규모 및 정도
3.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악의성 및 지속성
4. 기술탈취 방지 및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

제40조의10(소송비용의 부담) 법원은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패소한 위탁기업에게 수탁기업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기술감정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

<신 설>	용의 구체적인 산정 및 청구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11(수탁기업의 법률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는 수탁기업에 대하여 법률상당·소송대리·소송비용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에 따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신설되는 기술탈취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술탈취에 관한 소송에서는 수탁기업이 일정한 사실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조의7),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요구가 있었거나 비밀 유지, 비사용 의무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안 제40조의8),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에는 최대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안 제40조의9),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술탈취 피해 수탁기업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소송대리·소송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0).

먼저,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하고,³⁾ 일반적으로는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임.

다만, 분쟁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어있거나, 일방이 계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현행법 제25조의2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관련 분쟁이나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7판, 박영사, 2024, p.566.

개정안은 기술탈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제25조의2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 규정과 별도로 입증책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기술거래·위탁·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이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또한 해당 기술자료가 보호대상 기술임을 명시·통지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 요구가 있어서 위탁기업이 해당 기술자료가 보호대상 기술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 또는 비사용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술탈취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민사소송에서 통상의 요건사실의 입증은 ‘증명’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소명’이란 증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공탁이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통해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4)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5) 「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가해자가 고의·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즉, 개정안은 낮은 수준의 개연성인 소명만으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 측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해당 기술이 보호대상 기술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탁기업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일반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입법례의 경우 특정한 소송당사자 일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법원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방식이 수탁기업의 소송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효적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입법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해당 기술이 보호대상 기술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근거인 민법 제750조⁶⁾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실의 경중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월 19일에 공포되었고, 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로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정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⁷⁾는 위탁기업의 유용행위에 대하여 최

7)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경우에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고의적인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등에 대하여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 한도를 상향⁸⁾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10배까지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다른 법률과의 입법목적, 배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의 성격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정안의 손해배상액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 제40조의9제2항은 법원이 기술탈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손해의 5배 이내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사법부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패소한 위탁기업이 승소한 수탁기업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제40조의10의 경우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은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원칙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본적으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안 제40조의10 역시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령 비교

구 분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부경법 (영업비밀)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하도급법	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 기술보호법
소관부처	중기부	중기부	특허청	특허청	공정위	산업부	방사청
구제대상	영업비밀	기술자료 (비밀로관리)	영업비밀	특허 등	기술자료 (비밀로관리)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기술보호 대상요건	①비공지성 ②비밀관리성 ③경제성	① - ②비밀관리성 ③경제성	①비공지성 ②비밀관리성 ③경제성	①등록 특허 등	① - ②비밀관리성 ③경제성	①고시된 기술 (산업부고시)	①고시된 기술 (방사청고시)
NDA 체결의무	X	○	X	X	○	X	X
서면 발급의무	X	X	X	X	○	X	X
사실확인	신고→조사 (행정 조사)	신고→조사 (행정 조사)	신고→수사 (특사경)	신고→수사 (특사경)	신고→조사 (행정 조사)	수사연계 (경찰 등)	신고→조사 (행정 조사)
자료 제출요구	가능 (제8조의2)	가능 (제40조)	X	X	가능 (제24조의4)	X	가능 (제11조의2)
행정조치	①시정권고	①시정명령	X	X	①시정명령 ②과징금·벌금	X	①시정명령
분쟁조정 (위원회)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산업기술 분쟁조정 (위원회)	X
금지청구	X	○	○	○	○	○	X
손해 배상청구	○ (부경법에 따른)	○	○	○	○	○	X
손해액 산정	X	○	○	○	X	X	X
징벌적 손해배상	X	5배 이내	5배 이내	5배 이내	5배 이내	5배 이내	X
입증책임 전환제도	X	○	X	○	X	X	X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5조)	1천만원 이하 (제43조)	X	50만원 (제232조 심판 관련)	1백만 ~ 2억이하 (제30조의 2)	1천만원 이하 (제39조)	3천만원 이하 (제24조)
과징금	X	X	○ (원본증명기관에 부과)	X	○ (법위반행위자에 부과)	X	X
벌칙	X	①명령불이행시 ·5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	①국외 유출 ·15년/15억 ②국내 유출 ·10년/5억 ③몰수규정	7년/1억	①명령불이행시 ·1.5억원 이하	①국외 유출 ·15년/30억 ②국내 유출 ·10년/10억	①국외 유출 ·20억 ②국내 유출 ·10년/10억 ③몰수규정
계약 관계유무	X	수·위탁계약 (30가지유형)	X	X	하도급계약 (7가지유형)	X	X
조사권한	행정조사	행정조사	수사 (특사경)	수사 (특사경)	행정조사	수사 (경찰 등)	행정조사